

공고 및 고시

한국전기공업진흥회 공고 제91-1호

수입선다변화품목의 예외조치 수입추천요령공고

상공부고시 제91-21호(1991. 5. 13) 수입선다변화품목 공고 제3조 3호, 4호, 5호, 9호, 10호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공업진흥회(이하 "진흥회"라 한다)수입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91년 6월 11일
한국전기공업진흥회장

- 다 음 -

1. 국내제작을 위한 견본의 수입추천

(공고 제3조 3호)

가. 수입추천대상품목

수입선다변화품목 중 진흥회 소관 품목

나. 수입추천대상

전기공업관련생산업체중(외국과 기술제휴 또는 합작투자 신규업체 포함) 위 가항의 추천대상품목을 개발할 목적으로 견본을 수입코자 하는 자.

다. 수입추천기준

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추천함.

- (1)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일 것
- (2) 기타 국내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일 것
- (3) 추천수량은 개발에 필요한 최소량일 것

라. 구비서류

- (1) 수입승인신청서5부
- (2) 물품매도 약약서(원본)1부
- (3) 신청사유서1부
- (4) 개발계획서각1부
- (5) 공장등록증 또는 해당제조업체임을 입증하는 서류1부
- (6) 카달로그 또는 도면1부

- (7)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(전매금지각서등)

마. 처리기간

처리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공휴일 및 자료보완기간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
바. 추천유효기간 및 변경

- (1) 유효기간 : 추천받은 날로 부터 30일로 한다.
- (2) 기간연장 : 유효기간내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- (3) 추천사항 변경 : 변경내용 및 사유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시점이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.

사. 사후관리 및 제한

- (1) 견본품을 수입하는자는 그 사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.
- (2) 개발업체는 견본품 개발완료 즉시 그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진흥회장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현지확인토록 할 수 있다.
- (3) 개발이 완료되어 진흥회에 보고된 품목에 대하여는 확인후 사후관리를 면제 할 수 있다.
- (4) 개발완료되지 않는 수입견본품은 통관일로부터 3년까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시는 심의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유지보수용부품 수입추천 (공고 제3조 4호)

가. 수입추천대상품목

수입선다변화품목 중 진흥회 소관품목으로서 외국에서 도입한 기계, 장비의 유지, 보수 또는 국내에서 제작된 기계류 국산개발대상 품목의 유지, 보수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품목

나. 수입추천기준

유지보수용 부품으로서 국내수요에 비추어 경제성이 없거나 사양, 기능상 국산대체 및 수입선전환이 불가능하며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량 일 것

다. 구비서류

- (1) 수입승인신청서5부
- (2) 물품매도 확약서(원본)1부
- (3) 수입사유서 및 용도설명서1부
- (4) 카달로그 및 도면1부
- (5) 도입기계의 통관면장 또는 국산화 추진 세부 계획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라. 처리기간

처리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공휴일 및 자료보완 기간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
마. 추천유효기간 및 변경

- (1) 유효기간 : 추천받은 날로 부터 30일로 한다.
- (2) 기간연장 : 유효기간내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- (3) 추천사항 변경 : 변경내용 및 사유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시점이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.

3. 국산개발 소요부품 수입추천(공고 제3조 5호)

가. 수입추천대상품목

수입선다변화품목 공고 별표2에 명시된 국산개발 대상품목 중 진흥회 소관품목을 생산하기 위한 소요 부품

나. 수입추천대상

전기기기를 생산하는자

다. 수입추천기준

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산화계획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추천함.

- (1) 수입추천대상업체의 적격성

- (2) 당해 전기기기류 국산화의 경제적, 기술적 타당성
- (3) 부품의 국산개발 사용계획과 품목별, 국별 수입계획
- (4) 당해물품의 최저국산화율 적합여부 또는 국산화를 요하는 중요부품의 국산화여부
- (5) 년도별 국산화율 제고 계획
- (6) 제품의 생산능력에 상응하는 추천수량의 적정 여부
- (7)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수입선전환가능 여부
- (8) 수입부품의 국산대체가능 여부
- (9) 기타 수입추천에 필요한 사항

라. 구비서류

- (1) 국산화추진 세부계획서2부 (서식 1)
- (2) 부품수입추천 신청서2부 (서식 2)
- (3) 물품매도 확약서(원본)1부
- (4) 부품이 표시된 카달로그 또는 도면1부
- (5) 공장등록 및 당해 전기기기류 제조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
- (6) 사업계획 및 용도설명서각 1부

마. 처리기간

처리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공휴일 및 자료보완 기간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
바. 유효기간

추천받은날(또는 인정일)로부터 6월까지로 한다.

사. 변경신청

- (1) 추천서 유효기간내에 추천받은 수량이 소진되어 그 수량을 추가코자할 때는 추가신청 수량과 그 사유 및 추천신청서를 첨부하여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.
- (2) 기 추천받은 추천서중 규격의 일부변경, 일부 부품의 추가 및 삭제, 기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일부변경으로 인하여 국산화 계획 및 국산화율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.

아. 제 재

천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.

국산화추진 세부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수입 추천 신청서상에 국산부품을 사용할 것으로 추천받은 후 이를 수입하여 사용한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수입추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4. 긴급한 원자재의 조달이나 시설복구를 요하는 경우의 수입추천

수입선다변화품목 중 진흥회소관 품목

가. 수입추천 대상품목 : <별표 1>

나. 수입추천대상

천제지변 노사분규등의 사태로 긴급한 원자재의 조달이나 시설복구를 요하는 자

다. 수입추천기준

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추천함

- (1) 천제지변, 노사분규등의 발생정도
- (2) 기타 도입의 필요성 여부

라. 구비서류

- (1) 수입승인 신청서5부
- (2) 물품매도 확약서(원본)1부
- (3) 신청사유서 및 용도설명서1부
- (4)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
- (5) 카달로그 및 도면1부
- (6)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마. 처리기간

처리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공휴일 및 자료보완 기간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
바. 추천유효기간 및 변경

- (1) 유효기간 : 추천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한다.
- (2) 기간연장 : 유효기간내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- (3) 추천사항 변경 : 변경내용 및 사유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시점이 추천

5. 전시회에 출품된 신개발 제품 수입추천

수입선다변화품목 중 진흥회 소관 품목

가. 수입추천 대상품목 : <별표 1>

나. 수입추천대상

국내에서 생산자단체, 대한무역진흥공사, 한국종합 전시장이 주최로 개최하는 전시회에 출품된 신개발 제품

다. 수입추천기준

신개발 제품으로서 국내 관련사업의 기술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

라. 구비서류

- (1) 수입승인신청서5부
- (2) 물품매도확약서(원본)1부
- (3) 신청사유서 및 용도설명서1부
- (4) 카달로그 및 도면1부
- (5) 주최 또는 주관자가 확인한 송장1부
- (6)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마. 처리기간

처리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공휴일 및 자료보완 기간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
바. 추천유효기간 및 변경

- (1) 유효기간 : 추천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한다.
- (2) 기간연장 : 유효기간내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- (3) 추천사항 변경 : 변경내용 및 사유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시점이 추천

6. 보 고

수입추천실적은 매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상공
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21('91. 5. 13) 및 진흥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7. 기타사항

이 요령은 1991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요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공부고시 제91-

노사화합 기반위에 기업발전 국가번영

수입선 다변화품목

HS	품 목 명
8502 12 0000	○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(출력75KVA초과 375KVA 이하의 것)
13 1010	○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(출력 400KW에 상응하는 것 이상 750KVA이하의 것)
13 2000	○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(출력 750KVA초과 1,500KVA 이하의 것)
13 3000	○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(출력 1,500KVA초과 3,500KVA 이하의 것)
20 1000	○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(다만, 출력75KVA 이하의 것에 한함)
8504 40 2010	○ 무정전 전원장치(단상 0.5KVA 이상 50KVA 이하 및 삼상 10KVA 이상 750KVA 이하의 것)
40 2090	○ 전동기 속도제어장치(삼상 0.5KVA 이상 400KVA 이하의 것)
8508 10 1000	○ 각종의 전기드릴(착암기 제외)
10 9000	○ 기타 각종의 전기드릴(착암기 제외)
20 0000	○ 전기톱
80 2000	○ 전기그라인더, 샌더, 폴리셔와 브러셔어
80 2000	○ 대패와 그루버
80 9000	○ 기타의 수직식 전동공구
8535 21 1000	○ 진공차단기(정격전압 7.2K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3,000A 이하의 것)
8536 20 0000	○ 전압 1,000V 이하의 자동차단기중 다음의 것 - 배선용차단기(Circuit Protector를 포함하며 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, 200A 이하의 것) - 누전차단기(정격전압 4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,200A 이하의 것) - 기중차단기(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3,200A 이하의 것)
50 9000	○ 전자개폐기(Magnetic Switch : 전자접촉기를 포함하며 사용 전압 600V 이하용의 정격용량 375KW 이하의 것)
8537 10 2000	○ 자동제어반중 선박용의 것과 프로그래머블 콘트롤러
8539 31 0000	○ 형광램프(열음극형의 것)
8539 39 2000	○ 나트륨 램프
8544 11 1000	○ 절연도료 피복권선용전선
20 0000	○ 동축케이블과 기타의 동축도체
60 3010	○ 플라스틱 절연전선(전압 100KV초과의 것)
60 3090	○ 기타 전선(전압 100KV초과 것으로서 Bus Duct는 제외)

**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
생산기술발전 5개년 계획 1991년도 시행계획**

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생산기술 발전 5개년 계획의 1991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과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개발사업계획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991년 4월 24일
상 공 부 장 관

1. 지원내용

가.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통한 지원

- 1) 지원대상 기술개발과제 : 별첨1
- 2) 신청자격(개발사업주관기관)
 - 기업부설연구소
 - 산업기술연구조합
 - 민간생산기술연구소
 - 특정연구기관 및 생산기술연구원
 - 대학 또는 전문대학
 - 국·공립 연구기관
- 3) 우선지원 기술개발과제
 -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개발과제
 - 다수기업간 공동개발하고자 하는 과제
- 4) 신청자격 제한
 - 개별기업별로 현재 주관수행중인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.
 - 개별기업별로 현재 참여 수행중인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 4개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(산업기술연구조합 또는 민간생산기술연구소 주관사업을 5개 이상 참여 수행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)
 - 동일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 현재 수행중인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음.
- 5) 지원내용 : 총개발사업비의 80%까지 출연지원

- 6) 접수기간 : '91년 5월 27일~'91년 5월 31일
(우편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)
- 7) 접 수 처 : 생산기술연구원 연구관리실
(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90-2)
- 8) 기타
 - 개발사업계획서 작성방법, 신청양식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용요령(상공부고시 제 91-19호, '91. 4. 22)을 참고하시기 바람.
- 9) 문의처
 - 상공부 산업진흥과(전화 500-2425~8)
 - 생산기술연구원 연구관리실(전화 563-6891 교환 440~447)

나. 한국전력공사 기술개발자금 지원

- 1) 지원대상 기술개발과제 : 별첨2
- 2) 신청자격
 - 기업부설연구소
 - 산업기술연구조합
 - 민간생산기술연구소
 - 특정연구기관 및 생산기술연구원
 - 대학 또는 전문대학
 -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(에너지경제연구원, 한국과학기술원, 한국원자력연구소, 한국동력자원연구소, 한국전자통신연구소, 한국전기연구소, 한국화학연구소, 한국기계연구소, 한국표준연구소,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)
 - 한국전력공사 기술연구원
- 3) 우선 지원 기술개발과제
 -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과제
 - 다수기업간 공동개발하고자 하는 과제
- 4) 지원내용 : 총개발사업비의 80%까지 출연지원
- 5) 접수기간 : '91년 5월 27일~'91년 5월 31일
(우편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)
- 6) 접 수 처 : 생산기술연구원 연구관리실
(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90-2)
- 7) 기타
 - 개발사업계획서 작성방법, 신청양식등은

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운용요령
(상공부고시 제 91-19호, '91. 4. 22)을 참고
하시기 바람

8) 문의처

- 한국전력공사 기술기획처 연구개발부(전화 550-5871~6)
- 생산기술연구원 연구관리실(전화 563-6891 교환 440~447)
-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진흥부(전화 704-1361)

다. 체신부 기술개발자금 지원

1) 지원대상 기술개발과제: 별첨 3

2) 신청자격

- 한국통신공사법 시행령 제 12조의 2 제 1항 각호에 해당하는 다음 기관
 - 기업부설 연구소
 - 산업기술연구조합
 - 민간생산기술연구소
 - 특정연구기관 및 생산기술연구원
 - 대학 또는 전문대학
 - 기타 해당기관

3) 우선지원 기술개발과제

- 기업 및 연구소 공동기술개발과제
- 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과제

4) 신청자격의 제한

- 개별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3개과제까지 신청 가능함
- 개별기업이 참여기업인 경우 4개 과제까지 신청가능함 (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 주관과제인 경우에는 5개 과제까지 신청가능함)
- 동일 연구원이 총괄책임자인 경우 2개 과제까지 신청가능함

5) 지원내용: 총개발사업비의 80%까지 출연지원

6) 접수기간: '91년 5월 27일~'91년 5월 31일
(우편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)

7) 접수처: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산업기술개발부
(대전시 유성구 가정동 161)

8) 기타

- 개발사업계획서 작성방법, 신청양식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체신부 연구개발업무관리지침(체신부고시 제 139호, '91. 1. 1)을 참고하시기 바람.

9) 문의처

- 체신부 통신진흥과(전화 750-2321~4)
-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산업기술개발부(전화 042-820-6780)

라. 산업은행 기술개발자금 지원

1) 지원대상 기술개발과제: 별첨4

2) 신청자격: 별첨 4의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자

3) 지원내용: 소요자금의 100% 이내 장기저리 융자지원

- 대출이율, 대출기간, 상환방법, 신청요령 등은 산업은행이 별도 공고

4) 접수기간

- 1차 접수: '91. 5. 27~5. 31
- 2차 접수: '91. 7. 26~7. 31
(우편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)

5) 접수처: 산업은행 본점 금융 1~4부, 출자관리부

(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10번지의 2) 산업은행 전국 각 지점

6) 문의처: 산업은행 본점 금융 1~4부, 출자관리부(전화 733-2121, 732-4141)

2. 기타사항

- 상기 지원자금별 중복지원은 제한됨
-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, 한국전력공사 및 체신부 지원자금의 신청자격에는 접수마감일 현재 상공부에 설립허가 신청을 필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, 과학기술처에 설립인가신청을 필한 산업기술연구조합, 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신청을 필한 기업부설연구소도 포함됨(단, 협약체결시까지의 허가, 인가 또는 인정을 받아야 함)

- 한국전력공사 기술개발자금은 사업계획서 심의를 거쳐 개발주관연구기관이 선정되면 한국전력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주관연구기관간의 협약출연형식으로 지원됨.
- 산업은행 기술개발자금의 경우 1차 접수로 자금이 소진될 경우 2차 접수는 받지 않으며, 별첨 4의 과제외에 별첨 1, 2, 3의 과제에 대해서도 용자신청이 가능함
- 금번 공고된 기술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상기 지원자금외에도 공업발전기금,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, 국민투자기금, 산업은행의 첨단산업육성 기술개발자금중 기술개발자금을 우선용자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.
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
3. 공업기반기술수요조사 신청

- 상공부는 산업계의 기술수요에 따른 기술개발

지원을 위하여 산업계 공통애로기술, 취약기술을 발굴하고자 매년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기반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등 조사결과 도출된 개발필요과제에 대해서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등을 통하여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음.

- 1991년도에도 공업기반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바 기술수요조사의 실시가 필요한 특정 기술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운용요령(상공부고시 제91-19호)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.

-신청기간 : 제한없음

-접 수 처 : 상공부 산업진흥과 또는 각 공업국 해당과

-신청양식 :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운용요령 별지 제1호 서식

<별첨 1> <별첨 3> <별첨 4> : 생략

더 밝은 마음을, 더 밝은 사회를, 더 넓은 미래를